

수목매매계약서

매도인 :

매수인 :

매도인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매수인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다음에 표시한 수목을 매매하기로 하고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수목 소재지 :

품명	규격	수량(주)	단가(원)	금액(원)	비고
합계					

제1조 (매매대금 및 지급조건)

- 총 매매대금은 일금 원정(W)으로 한다.
- 계약금 일금 원정(W)은 계약 당일 현금 지급한다.
- 잔금 일금 원정(W)은 물건 인도 시 현금 지급한다.
(계좌번호:) 예금주:)

제2조 (물건의 인도)

- 물품 인수인계는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.
- 굴취 및 상차까지의 작업은 “ ”이 책임진다.

제3조 (계약의 해제)

- 계약 이후 물건의 양도가 법적,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, 기타 양자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경우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제3조 1항 외에 “갑”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고 “을”이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금은 무효로 한다.

제4조 (기타)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목매매에 대한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하고,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, 서울지방법원 중앙지원을 관할로 한다.

20 년 월 일

매도인(갑) 주 소:

전화번호:

주민번호(사업자번호):

성 명:

매수인(을) 주 소:

전화번호:

주민번호(사업자번호):

성 명(상호):